

# 검 토 보 고 서

안 건 명	부서명	페이지
1.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세무2과	1

( 2012. 10. 22 )

**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**  
**[ 전문위원 명 금 길 ]**

## **1. 안 건 명**

가.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**2. 제출일자 및 제출자**

가. 제출일자 : 2012년 10월 9일

나.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## **3. 의안 회부일자**

가. 2012년 10월 15일

나. 의안번호 : 12-82

## **4. 관련근거**

가. 「지방세기본법」 제97조, 제132조

나.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제67조

다. 「국세징수법」 제7조의4가

## [검토보고]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동 조례안은 징수포상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징수포상금 지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근거 법령 및 조문을 일부 개정하고,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촉탁제 시행에 따른 징수포상금 지급근거 등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것임.

### < 주요내용 >

- (1) 안 제2조제1항에서는 체납업무 직접 종사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.
- (2) 안 제2조제2항에서는 특별한 징수노력이 수반되는 「특별한 공적」 및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,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 징수사례 포상금 지급 제외함.
- (3) 안 제3조제7호에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촉탁에 의한 징수포상금 지급 기준을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으로 신설함.
- (4) 안 제4조에서는 지방세 관련 외부전문가 위촉으로 위원회 공정성 제고와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운영을 개선함.

### < 검토의견 >

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 -9740(2012. 5.15)와 관련하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,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개선하여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며, 세입징수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인용 법률을 수정하고 법률용어를 순화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, 입법예고 및 우리 구 조례·규칙 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